

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대행기관 지정의 취소
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7, 「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 호환성 인증 요령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대행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26일

국토교통부장관

☐ 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대행기관 지정 취소

취 소 일	기 관 명 (사업자등록번호)	소 재 지	처분내용	처분사유	비 고
22.12.26.	(사)한국교통 카드산업협회 (119-82-07808)	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0(가산동) A동 1310호(대성디폴리스)	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대행기관 지정의 취소	인증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 미충족	지정번호 제2020-1호